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3
----------	-----

발의연월일 : 2008년 12월 8일
발의자 : 최광옥, 이영복, 강태원,
권광택, 김법기, 이규완,
이필용, 최미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9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이내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고 원격지 거주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여비지급 기준 신설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조정

- 월 2,360,000원에서 월 2,640,000원으로 조정(안 제3조)

나.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 신설

-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비 지급 기준 신설(안 제7조)

다. 적용시기 :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발췌 : 별첨

가. 「지방자치법」 제33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다. 「충청북도의회정비심의위원회」 2009년도 의정비 결정통보 공문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월 2,360,000원”을 “월 2,640,000원”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원격지 회의출석 여비지급)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교통비(일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이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2,36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	제3조(월정수당) ① 월 2,640,000원.....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원격지 회의출석 여비지급)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교통비(일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생략)	제8조(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5] <개정 2008.10.8>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 지 급 기준액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해당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2009년도 충청북도의원 의정비 결정 알림

우리 위원회에서 2009년 충청북도의원 의정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알려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의정비 : 4,968만원
가. 의정활동비 : 1,800만원
나. 월 정 수 당 : 3,168만원
2.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에 따름.

붙임 2009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문 1 부. 끝.

성명	의정	이정민	직책	사무처장	장
접수일시	2008. 11. 27	연호 25671	(주관)	총무담당	장
처리과	총무담당반	사무처장	신형근	총무팀장	김민하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수신처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의회위원장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사무관  위원장

협조자

시행 의정비심의위원회-7 (2008.11.27.) 접수

우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문화동)

<http://www.cb21.net>

전화 043) 220-2133 / 전송 043) 220-2119 / taejin1968@cb21.net

/ 공개

2009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문

2009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를 다음과 같이
하기로 결정함.

□ 2009년 의정비 : 년 4,968만원

○ 의정활동비 : 년 1,800만원

○ 월 정 수 당 : 년 3,168만원

□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에 따름.

2008. 11. 27.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